교통안전관리규정 4-5-14

규정번호	4-5-14
제정일자	2026.11.23
최근개정	
개정차수	
관리부서	구매시설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(이하 “본교”라한다)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① “교통안전관리”란 본교 내에서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② “자동차”란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18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.

③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란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19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.

④ “개인형 이동장치”란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.

⑤ “자전거”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.

⑥ “전기자전거”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.

⑦ “교통안전시설물”이란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 등의 구조물을 말한다.

⑧ “도로”란 차도와 보도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교통수단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.

⑨ “차도”란 연석선(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),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교통수단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 및 범위) 이 규정은 본교 내에 출입하는 모든 교통수단의 운전자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주관부서)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지도단속 업무는 사무처가 담당한다.

제2장 교통안전관리

제5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 ① 교내에서 통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다음과 같다.

1. 자동차
2. 원동기장치자전거(단, 업무상 운행하는 것으로 제한함)

3. 자전거(공유 자전거는 제외함)

②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의 교내 통행은 금지한다.

③ 총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제1항의 교통수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기간과 시간을 정해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.

제6조(운행속도) 교내에서 주행하는 모든 교통수단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지하 주차장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속 1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통안전시설물의설치) 총장은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8조(단속 및 시정 요구) ① 사무처는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차유도반과 지도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주차유도반과 지도단속반은 본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, 그 기준과 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.

제3장 주차 관리

제9조(주차장소) 교내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은 주차장 등 지정된 주차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정기주차권) ① 주차장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정 요금을 납부한 후 교내의 정기주차를 위한 정기주차권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교원
2. 직원(정규직, 계약직, 조교 등)
3. 재학생
4. 비전임교원 및 강사 등
5. 본교 입주(임대) 및 용역(단기 공사 포함) 업체의 직원
6. 기타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② 정기주차권은 본인,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으며, 1인당 1대의 자동차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주차요금)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주차요금은 사무처장이 정한다.

제12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 ① 지도단속반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해당 구역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② 지도단속반은 지정주차구역 외에 주차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한 운전자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.

제13조(주차장 위탁운영) 총장은 교내 주차장 및 주차시스템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

주차관리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4장 운전자의 의무

제14조(보행자 보호 의무) ①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,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한다.

②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보행자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여야 한다.

③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운전자는 차도를 포함한 모든 구간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전자 준수사항 등) ① 운전자는 교통표지 안내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.

② 운전자는 교통수단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
③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
④ 운전자는 주차장 내 공회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⑤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
⑥ 운전자는 운전 중 이어폰, 헤드폰 또는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.

⑦ 운전자는 「도로교통법」 등 교통안전 관련 법령과 본교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(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)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관련자와 목격자는 즉시 경찰서, 소방서, 종합상황실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장 기타

제17조(지도단속 위반 시 조치) 본 규정에서 정하는 지도단속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교내 통행을 금지할 수 있으며, 그 기준과 방법은 사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